(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셜CI종신보험

## 2. 보험의 세목

1형: $50 \%$ 선지급형
2형: $80 \%$ 선지급형

## 3. 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 :---: |
| 계약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 :---: | :---: |
|  | 1형 $(50 \%$ 선지급형) | 2형 $(80 \%$ 선지급형) |
| 5년납 | 만 15 세 $\sim 60$ 세 | 만 15 세 $\sim 60$ 세 |
| 10년납 | 만 15 세 $\sim 57$ 세 | 만 15 세 $\sim 55$ 세 |
| 15년 납 | 만 15 세 $\sim 53$ 세 | 만 15 세 $\sim 51$ 세 |
| 20년납 | 만 15 세 $\sim 49$ 세 | 만 15 세 $\sim 47$ 세 |
| 55세납 | 만 15 세 $\sim 50$ 세 | 만 15 세 $\sim 50$ 세 |
| 60세납 | 만 15 세 $\sim 55$ 세 | 만 15 세 $\sim 55$ 세 |
| 65세납 | 만 15 세 $\sim 60$ 세 | 만 15 세 $\sim 60$ 세 |
| 70 세납 | 만 15 세 $\sim 47$ 세 | 만 15 세 $\sim 41$ 세 |

##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7.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기본사망보혐금" 과 "이미 납입한 보혐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 "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본보혐금" 으로 한다.

나. '가' 에서 "기본사망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 8.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혐료 외에 보혐기간(약관에서 정한 "CI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중 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

본보험료 총액" 이라 한다)의 $200 \%$ 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 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200 \%$ )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 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내지 '(2)' 의 납입한도에서 제 외한다.
(4) '(2)'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75 \%$ ) 이하로 하락하여 3 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 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내지 '(2)' 의 한도를 적용한다.

## 9.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 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 을 인출 할 경우의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아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 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text { 감액 전 계약자적립ㅁ }}$
(2)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text { 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 }}{\text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다. "감액(또는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1)' 및 '(2)'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10.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서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 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 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 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금비는 기본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11.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계약 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

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 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 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혐료 총액" 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혐료를 추가납입보혐료로 본다. 단, "기본보험료 총액" 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도인출로 인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 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 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단,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보 험가입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 소분이라 한다.

## 12.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혐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 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1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 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 험료를 공제한다.

다. '가' 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 을 납입한 이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 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아니 한다.

## 14.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중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회 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 개월 동안 1 회 이내에 한한다.

나. 1 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 를 초과할 수 없으 며, 10 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 와 2,000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 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 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 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 15.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6.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 개월간 확정 적 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를 최저한도로 한다.

공시시준이율 산출식 $=\frac{\text { 내부지표 }+ \text { 외부지표 }}{2}$
A. 내부지표

내부지표 산출식 $=\frac{2 \times(\mathrm{I}-\mathrm{E})}{\mathrm{A}_{6}+\mathrm{A}_{0}-(\mathrm{I}-\mathrm{E})} \times \frac{12}{6}$
(주) - I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mathrm{A}_{6}$ : 산출시점 직전 6 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mathrm{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외부지표산출식 $=\mathrm{B} 1 \times \mathrm{r}+\mathrm{B} 2 \times(1-\mathrm{r})$
(주)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 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 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 로 하며, $5 \%$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left(\mathrm{B}_{\mathrm{i}}\right)=\frac{\mathrm{B}_{\mathrm{i}}(-3) \times 1+\mathrm{B}_{\mathrm{i}}(-2) \times 2+\mathrm{B}_{\mathrm{i}}(-1) \times 3}{6}$
$-\mathrm{B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mathrm{B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mathrm{B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다' 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 [ '다' 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 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 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75 \%$ 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17. 기타

## 가.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 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1.5 \%$ 」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선납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최대 23개월분까지 선납 가능)
(2) '(1)' 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3)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 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 다.

## 라. 의무부가 특약

(1) 의무부가 특약의 종류
: (무)소액치료비보장특약
(2) 의무부가방법 및 부가한도
: 특약 가입금액 5,000 만원을 한도로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부가한 다.

마.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 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사.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에 관 한 사항
(1)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은 3 년마다 재산출하며 신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2)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 재 산출로 인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 기산출된 위험률의 안전할증비율에 해 당하는 기존계약의 과거 납입보험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 자. 보험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적립금 및 해약환급금
(3) 납입보험료 관련 사항(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한도 등)

차.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